

금융 2001-04

은행주식 보유한도 확대에 관한
논의와 개선방안

2001. 9.

김 현 욱

한국개발연구원

목 차

<요 약>

I. 논의의 배경	1
1. 우리나라의 은행소유규제 현황	1
2. 은행주식 보유한도 확대에 대한 찬반논의	2
II. 은행주식 보유한도제도에 대한 평가	5
1. 은행주식 보유한도제도의 성과	5
2. 위기 이후 금융여건 변화	6
가. 금융기관 자율·책임경영의 중요성 강조	6
나. 금융안전망(financial safety net) 강화	6
다. 금융의 국제화 진전	6
3. 현행 은행주식 보유한도제도에 대한 평가 및 개선 필요성	7
가. 규제적 측면에서의 실효성	7
나.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에 대한 기여	9
III. 주요 선진국의 은행소유규제	11
1. 미국	12
2. 영국	13
3. 독일	13
4. 일본	14

IV. 최근 제시되고 있는 은행주식 보유제한 완화방안	15
1. 금융주력기업제도	15
2. 은행투자펀드 활용	16
V. 은행소유규제의 개선방안	18
1. 기본방향	18
2. 구체적 방안	19
가. 은행주식 한도초과보유 금지제도를 단계별 사전승인제로 대체	19
나. 기업의 은행주식보유 승인요건 강화	19
다. 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금융감독 실시	20
라. 자기자본 투입의무비율제도 도입	21
마. 회계·공시제도 및 공정거래 관련규제 정비	22
바. 감독당국의 역량 및 의지에 대한 신뢰도 제고	23
<참고 1>	25
<참고 2>	26

<요 약>

- 우리나라의 은행소유규제는 1980년대초 은행 민영화 과정에서 재벌의 私金庫化 방지를 위해 도입된 은행주식 보유한도제도를 기반으로 함.
 - 현재 동일인의 시중은행 지분율을 4%로 제한하고 있으며 지방은행, 전환·합작은행 및 외국금융기관 등에 대해 예외를 인정
- 최근 정부가 책임경영체제 확립,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해소, 국유은행의 매각 촉진 등을 목표로 은행주식 보유한도의 확대를 추진
 - 이에 대해 현재의 금융감독 수준이 아직 미흡하며 철저한 감독수행 의지에 대한 확신도 없기 때문에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반대주장이 제기되는 등 찬반논의가 활발
- 그러나, 현행 은행주식 보유한도제도는 규제자체의 실효성 및 목적에 대한 적합성 차원에서 먼저 평가될 필요가 있음.
 - 산업자본, 특히 재벌의 은행소유에 대해 규제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은행주식의 보유제한 만으로는 교차지원 및 주주간 담합 등을 통한 대기업의 은행 사금고화를 방지할 수 없음.
 - * 한도적용의 예외 등으로 인해 과거 은행의 최대주주 지분이 10%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금융권과는 달리 은행권에 대주주 전횡이 없었던 것은 주식보유제한보다도 은행권의 금융감독이 상대적으로 엄격했던 점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보유주체를 불문하고 한도초과보유를 금지함으로써 금융자본의 은행소유는 물론 투자목적의 주식소유도 곤란하게 되었음.
 - * 특히, 경쟁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제도 및 경영관련 규제의 국제적인 정합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은행소유규제의 대내외 차별은 국내 금융자본 육성 및 장기발전을 저해할 가능성

- 한편, 보다 근본적으로 현행 은행소유규제가 ‘효율적 자원배분을 위한 자율·책임경영체제 구축’에 미치는 영향도 논의될 필요
 - 은행주식 보유제한이 과거 안전망이 미흡했던 금융시스템의 안정 및 예금자 보호에 기여한 측면이 있으나, 한편으로 정부의 개입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음.
 - * 특히, 은행산업 비효율의 근본원인인 ‘관치금융에 따른 경영유인의 왜곡’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는 증권시장 및 경영자시장의 형성을 저해하여, 책임경영체제 구축에 오히려 장애요소로 작용했을 가능성
 - 한편, 책임경영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전체주주의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고 이를 위해 정부개입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배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소유구조의 개선보다 더욱 중요
 - 그러나 이와 함께 건전한 지배주주가 경영감시기능을 철저히 수행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책임경영을 유도할 경우, 지배구조의 실효성과 안정성이 강화되고 은행 경영의 효율성도 더욱 제고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실효성이 저하되고 경영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주식 보유제한보다, 대주주에 대한 자격요건심사와 철저한 금융감독을 통해 사금고화 방지를 도모하는 것이 은행소유규제로서 합리적일 것임.
 - 그러나 정부의 개입 및 대주주의 전횡을 통제하고 소액주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가 마련되지 못할 경우, 소유규제의 변경만으로 은행산업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
- 구체적으로는 현행 은행주식의 한도초과보유 금지조항을 단계별 사전 승인 조항으로 대체하고, 은행산업의 건전성 제고 및 공정경쟁 확립을 위해 동 승인요건을 엄격히 규정하여 자의성 시비를 최소화

- 사금고화 가능성을 사전심사(screening)하기 위해 은행 대주주의 자격요건을 관련기업 및 계열사의 재무건전성과 부당 내부거래실적 등과 연계하고, 동 요건을 은행법에 엄격하고도 투명하게 규정
- 그러나, 기업의 은행지배력이 증대할 경우 금융감독이 더욱 복잡해지고 사금고화 및 이해상충 문제의 발생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금융감독 및 공정거래 관련조치의 강화가 필요
 - 은행의 대주주 기업 및 계열기업에 대해서도 금융기관 수준의 감독기준을 적용하여 재무건전성 등에 관한 정기적 검사를 의무화
 - 금감위 승인 이후에도 대주주 자격요건을 유지하도록 적합성 검증을 실시하고, 자격요건 미달시 의결권 제한 및 지분축소를 명령
 - 최대주주가 되는 기업의 건전한 은행경영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금융자본을 육성하기 위해 최대주주 및 관련기업 전체 자기자본의 일정비율 이상을 해당은행 또는 금융업에 투자하도록 의무화
 - 회계·공시제도의 강화로 자금흐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경쟁 차원에서도 대주주 여신 및 이해상충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여 금융감독의 자의성을 견제하고 감독실패 가능성을 보완
- 한편, 정부는 금융감독의 기능 및 역량강화와 동시에 철저한 감독수행 의지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
 - 감독소홀 및 대주주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대주주 자격요건 및 감독기준과 이의 변경절차에 대한 객관성·합리성을 확보해야 할 것임.

I. 논의의 배경

1. 우리나라의 은행소유규제 현황

□ 우리나라의 은행소유는 1980년대초 시중은행 민영화 과정에서 재벌의 은행 사금고(私金庫)화를 방지하기 위해 1982년 12월 「은행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동일인 은행주식 보유한도제도’를 통하여 규제되고 있음.

○ 보유한도는 1982년 당시 8%에서 1994년 12월 4%로 하향 조정

* ‘보유’는 자기 또는 타인의 명의로 소유하거나 담합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 사실상 지배하는 것을 포함하는 의미

○ 1982년 이전에는 「금융기관에 대한 임시조치법」이 은행주식에 대한 대주주의 의결권 행사범위를 의결권있는 주식총수의 10%로 제한

○ 한편, 1994년 12월 ‘금융전업기업가제도’가 도입되어 보유한도의 예외(12%)가 인정되었으나 1998년 1월에 동 제도를 폐지하였음.

* 금융전업기업가는 비금융업 영위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고 30대 대규모기업집단 계열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자기자금으로 당해은행 발행주식 총수의 4%를 초과하여 소유해야 하고 타은행 의결권부 주식의 1%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음.

□ 현재 동일인 은행주식 보유한도는 4%이며 제한적으로 예외를 인정

○ 정부·예금보험공사의 주식보유는 예외이며, 지방은행의 경우 15%까지, 전환은행은 8%까지, 합작은행은 승인받은 한도까지 허용

○ 외국금융기관은 금감위에 신고만 하면 10%(지방은행 15%)까지 보유할 수 있음.

- * 한도초과보유는 10%(지방은행 15%), 25%, 33%를 초과할 때마다 금감위의 승인을 통해 가능
- * 내국인은 외국금융기관이 신고·승인받은 한도까지 동일한 절차를 거쳐 한도초과보유 가능 (단, 30대 계열이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는 은행은 1개로 제한)

<한도초과보유 승인요건>

① 공통요건

- 신용불량자가 아닐 것, 대주주 신용공여한도 충족, 지배주주로서의 적합성

② 외국금융기관 (지주회사 포함)

- 국제적 영업활동에 적합한 규모와 국제적 신인도 보유
-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사실이 없을 것
- 재무상태의 적정성 (최근 3년간 BIS비율 8% 이상 등)
- 당해 외국감독기관의 경영·재무상태 등에 대한 확인 등

③ 내국인 - 개인

- 주식취득자금이 금융기관 차입금이 아닐 것

④ 내국인 - 법인

- 법인이 속한 계열의 자기자본비율이 30대계열 평균 이상
- 주식취득자금이 차입금이 아니고 당해법인의 자기자본 이내

2. 은행주식 보유한도 확대에 대한 찬반논의

- 최근 정부가 은행주식 보유한도 확대를 추진함에 따라 찬반논의가 활발
 - 은행주식 보유한도의 조정은 은행 책임경영체제 확립(주인 찾아주기) 차원에서 과거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문제임.
 - 그러나 최근 논의는 ‘기업경영환경 개선건의 조치계획’(5월 31일) 등과 관련한 재벌개혁의지 후퇴우려와 연계되어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 여부’에 그 초점이 맞추어짐.

□ 은행주식 보유한도의 확대에 대해 찬성하는 논거는 다음과 같은 규제완화의 장점들임.

○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 현행 4% 한도로서는 투자수익에 기초한 책임경영을 촉진시키는데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

○ 은행소유에 있어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해소

* 외국인들에게만 은행들에 대해 사실상 최고 100%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내국인들에 대한 역차별임.

○ 구조조정과정에서 정부가 소유하게 된 은행주식의 민간매각과 이를 통한 은행의 민영화 및 자본확충을 촉진

* 위기 이후 정부가 공적자금투입 은행들의 지배주주가 될 수 밖에 없었으나 빠른 시일 내에 이 은행들을 민영화하는 것이 바람직

□ 그러나 은행소유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견해는 다음과 같은 문제로 인해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

○ 산업자본과 은행업의 결합으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며 경제력집중 및 불공정 경쟁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아직 이에 대한 감시장치가 미흡한 수준

* 기업의 영향력 증대로 경쟁기업 대출제한, 부실자회사 등에 대한 무리한 대출, 보유정보의 부당한 이용 등 이해상충 문제 발생 가능

○ 금융위기 이후의 금융감독 강화에도 불구하고 사금고화를 방지하기에는 불충분하며, 철저한 감독수행의지도 의문스럽다고 우려

은행별 대주주 주식소유 현황 (2001년 3월말 현재)

(단위: %)

은행	주주 (지분)
조흥	예금보험공사(80.05)
제일	뉴브리지(51.0), 예보(45.9), 재경부(3.1)
서울	예보(100.0)
한빛	우리금융지주회사(100.0)
외환	코메르츠(32.6), 수출입은행(32.5), 한은(10.7)
국민	골드만삭스(11.07), 정부(6.48),
주택	정부(14.5), ING(9.9), Bank of New York DR(15.4)
신한	재일동포(28.0)
한미	칼라일 컨소시엄(40.1), BOA(10.1), 삼성그룹(10.1)
하나	알리안츠AG(12.5), 코오롱(6.1), 신도리코(5.4), 동원증권(5.2)
평화	우리금융지주회사(100.0)
대구	삼성생명(8.1)
부산	롯데제과(14.2)
광주	우리금융지주회사(100.0)
제주	예보(100.0)
전북	삼양사(10.9)
경남	우리금융지주회사(100.0)

주: 한미은행은 5월 BOA가 지분 6.75%를 삼성생명에 매각해 삼성그룹 지분이 16.8%로 늘고 BOA는 3.3%로 줄어듦.

* 주요 외국언론들도 정부의 은행주식 보유한도 상향조정 검토에 대해 재벌의 영향력 확대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 (<참고 1> 참조)

- 또한 ‘대기업의 은행소유는 허용하되 경영권 장악은 배제한다’는 정부의 방안은 법적으로 주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이라는 논리에도 상충되는 것이라고 평가

II. 은행주식 보유제도에 대한 평가

1. 은행주식 보유제도의 성과

- 지금까지 은행주식 보유제도가 금융안전망(financial safety net)의 확립이 미흡하였던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 및 이를 통한 예금자 보호에 기여했던 측면은 있음.
 - 특히 위기 이전에 금융감독이 미흡하고 예금보험제도가 없었던 상황에서 대기업집단의 경영참여를 제한함으로써 은행권에서 대주주의 전횡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
 - * 반면 주식보유한도가 없었던 제2금융권의 경우 금융감독마저 은행권보다 취약함에 따라 금융기관의 사금고화가 조장되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금융위기의 내부적 요인으로 작용
-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은행주식 보유제도가 정부의 은행경영 개입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임.
 - 정부는 개발정책의 수행과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 등 시장실패 보정 등의 명목으로 은행의 내부경영에 깊숙이 간여하여 왔음.
 - * 주식이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으면 경영자의 과도한 양적성장 추구행위와 비용선호행위(red carpet effect) 등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따른 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 우리나라의 경우 대리인 문제를 축소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소유·지배구조를 조정해 가는 과정을 거치지 못했으며, 증권시장 및 경영자시장의 미발달로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음.

2. 위기 이후 금융여건 변화

가. 금융기관 자율·책임경영의 중요성 강조

- 최근 들어 민간부문의 창의적 의사결정을 중시하는 시장원리의 확립이 강조되는 등 경제의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
 - 채권시장의 발달에 따라 은행 및 기업의 신용상황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으며, 경영자시장 구성에 관한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음.

나. 금융안전망(financial safety net) 강화

- 금융감독기구의 통합 및 예금보험제도의 개편 등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인 정비가 이루어졌음.
 - 정부기관의 감독유예(forbearance)를 방지하지 위해 적기시정조치가 도입되는 등 금융기관 부실 예방 및 신속한 해결을 위한 체제 마련
 - 예금보험기구의 부실금융기관 경영진 및 채무기업에 대한 조사권이 강화되는 등 금융기관의 대주주·경영진에 대한 책임추궁 강화

다. 금융의 국제화 진전

- 위기 이후 금융의 국제화가 급속히 추진됨에 따라 금융기관 소유·지배 구조의 국제적인 정합성 및 금융권역간 형평성에 대한 중요성 강조
 - 국제화로 인한 경쟁심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장제도는 물론 금융기관의 경영관련 규제도 국제적인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
 - 특히 은행주식보유에 대한 대내외 차별은 국제적 정합성에 배치됨.

3. 현행 은행주식 보유제도에 대한 평가 및 개선 필요성

- 현행 은행주식 보유제도 유지여부는 규제의 실효성 및 목적에 대한 적합성에 대한 판단과 함께 ‘자율·책임경영을 통한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라는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함.
 - 사금고화 방지를 위해 산업자본의 은행지배, 특히 재벌의 은행소유에 대한 규제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현행 주식보유제한과 같은 규제에 대해서는 그 실효성과 동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효과 및 비용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개선방향이 제시될 필요

가. 규제적 측면에서의 실효성

- 현행 은행주식 보유제도 목적은 은행이 대주주의 전횡에 따른 과도한 위험부담으로 부실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의 출현 자체를 사전적·원천적으로 막는 데 있음.
 - 독점규제 및 금융감독제도 또는 능력이 미흡한 경우, 사전적으로 은행주식보유를 제한하는 방법이 유효할 수도 있음.
- 그러나 은행주식의 한도초과보유를 금지하더라도 교차지원 및 주주간 담합 등으로 인한 대주주의 전횡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며, 결국 사금고화는 금융감독의 강화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임.
 - 산업자본과 은행업의 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선진국의 경우도 주식보유를 제한하기보다, 철저한 금융감독을 통해 기업의 은행주식보유에 따르는 부작용의 발생을 차단하는 방식의 은행소유규제를 채택
 - * 산업자본과 은행의 완전한 분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금융자본이 은행을 지배하는 경우에도 대주주 전횡 등 문제발생은 가능

- 또한 규제의 적용도 엄격하지 못했으며, 전환은행·지방은행 등에 대한 예외적 한도적용으로 인해 은행의 최대주주 지분이 10%를 상회하거나 대기업이 실질적인 최대주주인 경우가 많았음. (<참고 2> 참조)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금융권에 비해 은행권에 대주주의 전횡으로 인한 문제가 없었던 것은 주식보유제한보다도 은행권의 금융감독이 상대적으로 엄격했던 점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됨.
- 한편, 보유주체를 불문하고 한도초과보유를 금지함으로써 금융자본의 은행소유는 물론 투자목적의 주식소유도 곤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
 - 최근의 금융감독 및 예금보험 관련제도의 개선을 감안할 때 ‘사금고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 모든 국내 경제주체의 은행주식보유를 사전적으로 제한하는 규제를 유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음.
- 경쟁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제도 및 경영관련 규제의 국제적인 정합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은행소유규제의 대내외 차별이 국내 금융자본의 육성 및 금융산업의 장기발전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음.
 - 외국자본의 은행지배가 확산되면 선진경영기법 전수 등의 장점과 더불어 거래기업 내부정보의 국외유출 및 자금지원을 통한 외국자본의 국내기업에 대한 지배력 강화 등 부작용도 커질 수 있음.
 - 특히, 단기투자차익을 목표로 하는 투자펀드 형태의 외국자본의 은행지배는 경영체제의 불안정 및 단기화로 국내 은행산업의 발전에 역효과를 가져올 가능성
 - * 선진국의 상업은행들이 은행업에 진출한 여타 개도국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투자은행 또는 투자펀드 형태의 외국자본이 은행업에 진출

* 일반적으로 투자펀드는 금융불안상황에서 매각철수 가능성이 크며, 은행과는 달리 본국의 금융감독을 받지 않는 등 안정성이 낮음.

○ 또한 향후 정부보유 은행지분의 매각과정에서 국내자본과의 경쟁이 제한되어 적정가격이 형성되지 못할 우려도 있음.

□ 따라서 은행주식에 대한 동일인의 보유를 4%로 제한하고 있는 현 제도는 실효성이 없으며 목적에 대한 적합성도 미흡하다고 판단됨.

○ 향후 국내외 자본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이 활성화되는 경우 대기업을 중심으로 은행차입 의존도가 하락하게 되어 사금고화를 목적으로 하는 은행소유 유인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사료됨.

나.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에 대한 기여

□ 우리나라 은행산업 비효율은 근본적으로 ‘관치금융으로 인한 은행의 건전경영 유인 상실’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음.

○ 정부의 개입과 경쟁제한적 규제 및 주주의 경영성과에 대한 무관심으로 은행이 기업감시기능을 수행할 유인을 찾지 못하였으며, 이는 기업의 과잉투자과 은행의 수익성·생산성 저하를 초래

□ 이러한 비효율의 배경으로서 은행주식 보유제한이 책임경영체제 구축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검토해 볼 필요

○ 은행주식 보유제한이 과거 안전망이 미흡했던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기여한 측면이 있으나, 한편으로 정부의 개입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을 것임.

* 결국 사금고화 방지라는 본래 목적은 금융감독으로 달성되었으며, 은행주식 보유제한은 대형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정부의 경영개입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또한, 동 규제가 경영유인왜곡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는 증권시장 및 경영자시장의 육성을 저해하여, 자율·책임경영체제의 구축에 오히려 장애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
 - * 동일인의 은행주식보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주주들간에 무임승차(free-rider) 문제가 나타나 시장에 의한 경영감시 및 능력있는 경영진 확보를 위한 유인제공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음.

- 한편, 은행의 책임경영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전체주주의 이익극대화를 추구하고, 이를 위해 정부의 경영개입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유인과 능력이 있는 지배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
 - 특히 관치금융으로 인한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소유구조보다도 소액주주의 경영진에 대한 책임추궁 등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경영에 대해 전체주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지배구조의 확립이 전제될 필요
 - * 또 정부의 직·간접적 개입이 계속되거나 대주주 전횡을 통제하지 못할 경우 은행의 효율성 제고는 불가능함을 명심하여, 금융감독기능의 강화를 통해 동 지배구조의 원활한 작동이 담보되어야 함.

- 그러나 이와 더불어 건전한 지배주주가 경영감시기능을 철저히 수행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책임경영을 유도할 경우, 지배구조의 실효성과 안정성이 강화되고 경영의 효율성도 더욱 제고될 수 있음.
 - 경영진에 대한 충분한 유인제공이 용이하게 되어 경영자시장의 발전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
 - 따라서, 전체주주의 이익 극대화를 보장하는 지배구조의 형성과 더불어 건전자본의 은행소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개선도 함께 추진될 필요

III. 주요 선진국의 은행소유규제

- 선진국의 경우에도 은행산업의 공공성 및 은행부실이 초래하는 경제·사회적 혼란을 감안하여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규제하고 있으나, 주식 보유 자체를 제한하기보다는 금융감독의 강화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
 - 동일인이 은행주식을 일정비율 이상 소유하고자 할 경우 감독당국에 신고하거나 사전승인을 받도록 은행법 또는 독점금지법을 통해 규제
 - 규제를 통해 지분의 분산을 강제하기보다는 엄격하고도 철저한 금융감독 및 회계·공시제도, 내부거래에 관한 엄격한 규제 등으로 경영투명성을 확보하여 기업의 은행 사금고화 유인을 차단

주요 선진국의 은행소유규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규제대상	- 동일인이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부 주식을 25% 이상 취득하고자 할 경우 - 동일인 지분율이 10% 이상으로서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 동일인이 은행주식을 15%, 50%, 75%를 초과하여 취득할 경우 · 단, 5% 이상 취득할 경우 7일이 내 신고	- 동일인이 금융기관의 의결권부 주식의 10% 이상 취득하고자 할 경우 - 동일인 지분율이 20%, 33% 또는 50% 이상에 도달할 경우	- 일반기업 및 개인이 일본 국내기업(금융기관 포함)의 주식을 취득·소유함으로써 일정 업무영역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규제기관	- FRB, 감독기관	- 금융감독원	- 연방은행 감독청	- 공정거래위원회
규제목표	- 독점 및 경쟁제한 방지 - 공공 및 예금자의 이익 보호	- 대주주로서의 적격성 - 예금자의 이익	- 금융기관 대주주의 적격성 확보 -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 제고 - 금융감독의 효율성 제고	- 일반기업의 금융기관 주식취득 제한보다는 동종업종 경쟁기업의 주식취득으로 인한 경쟁제한 방지를 위한 장치
규제내용	- 주식매수계획의 승인 거부	- 주식매수계획의 승인 거부 또는 기승인사항 취소	- 주식의 취득 금지 - 의결권 행사 금지	- 주식의 취득·소유 금지
규제근거	- 은행지배권의 변경에 관한 법률	- 금융업 및 금융시장에 관한 법률	- 신용조직법	- 독점금지법

1. 미국

-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일정비율 이상 소유하고자 할 경우 감독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동일인(개인 또는 그룹)이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25% 이상 소유하고자 할 경우
 -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10% 이상 소유하는 경우 또는 비상장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10% 이상 소유하여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 * 한편, 은행지주회사법(1956년 제정)은 은행지주회사가 은행업과 관련이 없는 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하여 은행지주회사를 통한 산업자본과 은행의 결합을 견제하고 있음.

- 감독기관인 연준은 주식매수가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식매수계획을 거부할 수 있음.
 - 독점적 지위 또는 경쟁제한적 결과를 가져온다고 예상되는 경우
 - 경쟁제약으로 공공의 이익이 저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인수자의 재무상태로 인해 은행의 건전성이 저해되거나 예금자의 이익이 저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인수자의 능력, 경력, 성실성이 공공의 이익이나 예금자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연준은 최근 3년간(1997~99년) 492건의 은행지배권 변경통지서를 접수하고 이중 1건에 대해 불승인 처분하였음.

2. 영국

- 은행의 주식을 일정비율 이상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감독청(FSA)에 신고하거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5% 이상 15% 미만 취득한 경우 7일 이내에 신고
 - 15%(minority shareholder), 50%(majority shareholder) 및 75% (principal shareholder) 초과 취득시에는 각 단계별로 사전승인
- 금융감독청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주식매수계획을 거부할 수 있음.
 - 은행주식을 일정비율 이상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대주주로서 적합한 (fit and proper)인물일 것
 - 대주주로서 그 기관의 예금자 또는 잠재적 예금자의 이익을 위협하지 않을 것
- 영국에서 대주주의 적합성을 심사하는 것은 예금자 보호차원이며, 지분률이 높아질수록 심사를 강화

3. 독일

- 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 이상 취득하고자 할 경우 「신용조직법」에 의거 연방은행감독청과 연방은행에 사전신고하여야 함.
 - 지분율이 20%, 33%, 50%에 도달하거나 이를 초과하여 소유하고자 할 경우와 사실상 금융기관 경영권을 장악하게 되는 경우에도 신고

- 연방은행감독청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신고인의 주식취득 또는 지분 증가를 금지할 수 있음.
 - 신고인을 신뢰할 수 없거나 신고인이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자본참여로 금융기관이 신고인의 기업집단에 속하게 되어 효과적인 감독이 어려워질 경우

4. 일본

- 은행주식 소유에 대한 은행법상의 제한은 없으나 경제력 집중 방지차원에서 타회사 주식의 소유를 제한하고 있는 독점금지법의 규제를 받음.
 - 일반회사 및 개인이 여타 국내회사(금융기관 포함)의 주식을 취득·소유함으로써 일정한 업무영역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게 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소유를 금지
 - *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타회사 주식을 5%(보험사의 경우 10%)를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것을 금지
- 일본의 타회사 주식소유에 대한 제한은 일반회사의 금융기관 주식취득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동종업종 경쟁회사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시장을 지배하여 경쟁이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임.

IV. 최근 제시되고 있는 은행주식 보유제한 완화방안

- 최근 은행주식 보유제한의 완화방안으로 ‘금융주력기업제도의 도입’ 및 ‘은행투자펀드 활용’ 등이 거론되고 있음.
 - 일정한도 이상의 은행주식 보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체제를 유지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한도초과보유를 허용하는 방안

1. 금융주력기업제도의 도입

- 금융주력기업제도는 대기업집단이라도 자기자본의 일정비율(예: 75%) 이상을 금융업에 투자한 경우 한도(4%)초과 은행주식보유를 허용하는 방안
 - 은행주식 매입시점에 동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일정기간 이내에 충족시킬 것을 약정하는 경우 허용
- 동 제도는 산업자본과의 차별화를 통한 일부 대기업의 은행소유 촉진과 함께 장기적으로 금융자본의 형성에 기여할 것임.
 - 단, 비금융업 지분의 정리계획 및 대주주 자격요건 등을 엄격히 규정 하여 은행소유 허용과 관련한 자의성 시비 및 불건전 기업의 은행지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
- 그러나 금융주력기업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희소하여 유명무실해 지거나 단독 대주주의 은행지배를 조장하는 효과가 나타날 우려도 있음.
 - 현실적으로 동 제도가 도입될 경우 상호건제가 가능한 복수의 대주주群이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이며, 따라서 1개의 금융주력기업이 단독으로 은행을 지배하는 체제가 형성될 가능성이 큼.

2. 은행투자펀드 활용

- 은행투자펀드의 활용방안은 연기금, 뮤추얼펀드 및 대기업 컨소시엄 펀드 등에 대해 은행주식의 한도초과보유를 허용한다는 것임.
 - 단일 기업 및 그룹의 은행주식 매입을 위한 자금여력이 미흡한 상황에서 은행주식 보유제한 완화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
- 기본적으로 기관투자자의 은행지분 참여확대는 시장에 의한 경영감시를 강화하여 책임경영의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정부보유 은행지분의 매각이 용이해 질 것으로 예상되어 공적자금 회수의 극대화에도 기여
- 그러나 대기업 컨소시엄 펀드의 은행경영 지배는 여전히 ‘은행 사금고화’ 문제의 발생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
 - 펀드의 지배주주에 대한 부채비율, 자기자본 등 적격성 심사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하고 대기업의 펀드 지분율도 제한할 필요
- 또한 현행 은행주식 보유제한은 유지하되 연기금 및 뮤추얼펀드 등의 한도초과보유 만을 허용할 경우 은행산업의 안정적 성장에 오히려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최근 단기투자이익을 목표로 하는 외국 투자펀드의 국내은행업 진출 확대에 의해 은행 경영체제의 안정성 저하에 대한 우려가 나타남.
 -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도 외국펀드와 같이 단기적 투자이익을 목표로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의 경영참여가 확대될 경우 국내은행의 소유·지배구조가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

* 현재 금융기관 등 기관투자가는 은행 이사회 구성에 필요한 주주 대표가 될 수 없으나, 연기금 또는 뮤추얼펀드 등에 대한 주주대표 제한은 없는 상태로 은행주식 보유제한이 완화될 경우 이들 펀드가 경영참여를 위해 은행주식을 매입할 가능성이 큼.

□ 따라서 은행투자펀드 등 기관투자가의 경영참여는 은행산업의 소유구조가 어느 정도 안정된 이후에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재로서는 투자수익 목적의 참여를 통한 시장에 의한 경영감시기능 강화가 더 중요

○ 당분간은 연기금, 뮤추얼 펀드의 주주대표 자격을 여타 기관투자가들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경영참여를 제한

* 은행의 책임경영체제가 확립되어 있는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도 기관투자가의 은행주식 보유비중이 높지만 대부분 투자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음.

V. 은행소유규제의 개선방안

1. 기본방향

- 금융기관, 특히 은행의 소유구조는 그 기관의 건전성과 안전성은 물론 국민경제의 자본형성과 성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 따라서 기업에 대한 재산권의 상당부분이 1인 또는 그 가족에 의해 지배되는 상황에서 이들이 은행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도록 허용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조치는 신중을 기해야 함.
- 그러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 및 국내 금융자본의 성장을 오히려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현행 ‘은행주식 보유한도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될 필요
 - ‘재벌의 은행지배 방지’ 논리에 집착하여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보다, 대주주에 대한 자격요건 심사와 철저한 금융감독을 통해 사금고화 방지를 도모하는 것이 은행소유규제로서 합리적일 것임.
 - * 금융주력기업제도와 은행투자펀드 활용방안의 경우에도 자격요건 및 금융감독을 엄격히 적용할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 있음.
 - 그러나 정부의 개입 및 대주주의 전횡을 통제하고 소액주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가 마련되지 못할 경우, 소유규제의 변경만으로 은행산업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
- 이와 더불어 현재의 감독수준과 당국의 감독수행 의지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은행 대주주와 관련한 규제 및 감독기준을 보다 엄격·명확히 설정하고 자의성을 견제·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함.

- 공정거래관련 법령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지배주주에 대한 여신규제 및 불공정한 은행경영에 대한 처벌강화 등 금융감독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조치를 병행

2. 구체적 방안

가. 은행주식 한도초과보유 금지제도를 단계별 사전승인제로 대체

- 은행법 상의 동일인 은행주식 한도초과보유 금지조항을 은행 대주주 자격요건 및 공정경쟁 요건 등에 근거한 사전승인 조항으로 대체
 -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도 일반기업의 은행지배를 제한하고는 있으나 한도초과보유를 금지하기보다는 지분율이 일정수준 이상일 경우 감독당국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내·외국인 여부를 불문하고 은행지분을 4% 이상 취득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의무화하고, 10% 이상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
 - * 동일인의 은행지분율이 10%, 25%, 33%를 초과할 때마다 금융감독위원회가 심사를 통해 승인

나. 기업의 은행주식보유 승인요건 강화

- 대주주의 자격요건을 관련기업 및 계열사의 재무건전성과 부당 내부거래 실적 등과 연계하고 동 요건에 미달할 경우 승인을 거부
 - 현행 한도초과보유 승인요건을 보완하고 ‘지배주주로서의 적합성’ 기준을 구체화하여 과거 금융기관의 부실초래 책임여부 및 내부거래 등으로 처벌받은 사실여부 등을 승인거부 근거가 되도록 명시

- 승인요건을 엄격·투명하게 규정하여 자의성 시비를 최소화하고, 관치금융 해소 및 대주주의 전횡방지에 대한 시장신뢰도 제고를 도모
- 대주주 자격요건 강화로 은행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대기업집단이 지배주주가 되는 것을 사전심사(screening)할 수 있음.
 - * 사금고화 가능성으로 인해 투자목적의 은행주식소유도 일괄적으로 금지되는 현행 규제를 합리적으로 보완
- 강화된 승인요건은 내·외국인에 공통적으로 적용하여 내국인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자격미달 기업의 해외금융기관을 통한 우회적 은행지배 가능성도 차단

다. 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금융감독 실시

- 기업의 은행지배력이 증대할 경우 금융감독이 더욱 복잡해지고 사금고화 및 이해상충 문제의 발생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
 - 은행에 대한 감독기능의 충실한 수행과 함께 은행 대주주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을 실시하는 등 감독기능의 강화가 필요
- 은행의 대주주 기업 및 계열기업에 대해 금융기관에 준하는 감독기준을 적용하여 재무건전성 등에 관한 정기적 검사를 의무화
 - 4% 이상의 은행지분 취득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고되거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이 해당 주주 및 계열기업에 대해 검사
 - 10% 이상의 은행지분을 보유하는 주주 또는 최대주주에 대해서는 은행과 같이 재무·경영건전성에 관한 정기적 보고를 의무화하고 최소한 연 1회 이상의 정기검사 및 필요시 특별검사를 실시

- 해당 은행에 대해서도 동일인 여신한도 충족여부 등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여 사금고화 등 소유제한 완화의 부작용 가능성을 최소화
- 10% 이상의 은행지분을 금감위의 승인을 받아 보유하고 있더라도 대주주로서 적합하지 않거나 예금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의결권 행사의 제한 및 일정기간 이내 소유지분의 축소를 명령
 - 자격요건을 동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대주주 자격요건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 (dynamic fit and proper test)
 - 동 조치와 관련된 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하여 사후적으로 발생 가능한 감독기관의 경영개입 여지도 최소화할 필요

라. 자기자본 투입의무비율제도 도입

- 금감위의 승인을 받아 10% 이상의 은행지분을 보유하는 최대주주의 경우 일정기간 내에 최대주주 및 관련기업 전체 자기자본의 일정비율 이상을 해당은행(예: 50%) 또는 금융업(예: 80%)에 투자하도록 의무화
 - 최대주주인 기업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자본금의 규모를 높게 설정함으로써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책임경영의 정착 및 정부의 개입에 대해 합리적으로 대응하게 하는 유인을 제공
 - * 은행지분의 상당부분을 매입하는 대기업이 자기자본의 아주 작은 일부분만 투입해도 된다고 허용할 경우 예금자 또는 여타 주주의 비용으로 고위험자산에 투자할 유인이 커지게 됨.
 - 금융업에 대한 자기자본 투입의무는 장기적으로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자본의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최대주주의 자기자본 투입의무비율 충족기한은 기술적 문제가 없을 정도의 최단기간(예: 6개월)으로 설정하고 동 기간내 이행계획을 제출하게 하여 충족가능성을 심사
 - 감독당국의 자의성을 견제하고 정책적 고려 및 정치적 영향력의 개입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
 - 이행계획 및 세부기간별 이행상황은 제3자로 구성된 전문가회의에서 객관적으로 심사·점검하게 하고 의무비율충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의결권 제한 및 10% 초과 지분취득에 대한 승인을 취소
 - 의무비율의 충족 가능성에 대한 결정 및 판단근거는 문서화하여 즉시 공시토록 하고, 문제발생시 책임추궁의 근거로 이용

- 한편, 외국인과 동일지분을 보유하는 최대주주의 경우 동 의무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오히려 지분율을 감축할 수 있으므로, 외국인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하는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 적용대상에서 제외
 - 또한 주주대표 자격 등 의결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에도 동 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

마. 회계·공시제도 및 공정거래 관련규제 정비

- 회계·공시제도의 강화 및 지속적인 보완으로 자금흐름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은행의 책임경영을 촉진하고 대주주에 대한 여신규제 및 이해상충행위 등에 대한 사후적 감독 강화의 실효성을 제고
 - 공시제도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있는 선진국에서는 시장에 의한 경영감시가 가능하여 대주주가 은행을 사금고화할 유인을 찾기 어려움.

-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금융거래에 대한 조사권을 강화하여 기업의 은행주식 취득승인과 관련한 금융감독기구의 자의성을 견제하고 감독실패 가능성을 보완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
 - 경쟁기업에 대한 금융제한 및 경쟁기업의 금융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추구와 같은 대주주의 은행지배를 통한 불공정거래행위 차단
 - 주요주주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엄격히 설정·운용하고 금리 또는 담보면에서 일반인과 거래조건이 동일하며 채무이행에 특별한 위험이 없도록 규제하여 편중·편파적인 금융지원을 최소화
 - * 교차여신 등 여신한도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타 은행 대주주와의 담합행위에 대해서도 조사 및 처벌을 강화

바. 감독당국의 역량 및 의지에 대한 신뢰도 제고

- 정부는 감독소홀 및 대주주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대주주 자격요건 및 감독기준과 이의 변경절차에 대한 객관성·합리성을 확보하여 감독수행 의지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
 - 특히, 은행소유규제의 변경이 공적자금 회수극대화 등 정책적 현안문제 해결을 목표로 추진될 경우, 향후 실행과정에서 감독기준이 철저히 준수되기 어려울 것임.
 - * 향후 민영화 과정에서 정부출자지분의 매각이 부진할 경우 정부가 대주주 자격 및 감독기준의 완화를 시도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음.
 - 따라서, 동 규제의 변경이 규제의 합리화 및 은행산업의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함을 분명히 하고, 엄격한 감독수행 의지를 확신할 수 있도록 감독소홀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유인체계의 정비를 추진할 필요

- 또한 강화된 금융감독기능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의 인적·기술적 역량강화도 꾸준히 추진되어야 함.
 - 우리나라 금융감독의 질적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낮으며, 기업의 은행소유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에 미흡하다는 우려가 있음.
 - * 대주주 기업의 전횡에 의한 은행부실화는 초단기간 내에 발생할 수 있어 감독당국이 제대로 감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도 있음.
 - 그러나 사금고화 등 대주주 전횡의 가능성은 어떠한 소유규제 하에서도 나타날 수 있으며, 결국 철저한 금융감독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임.
 - 따라서 감독당국은 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내부규율 강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감독정보의 일반공개 확대를 통한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함.
- 한편, 금융 겸업화가 진전되는 추세를 감안할 때, 규제의 실효성, 일관성 및 형평성 확보를 위해 대주주 자격요건 등 은행의 소유관련 규제를 비은행 금융기관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

<참고 1>

— <최근 외국인론 동향> —

- 정부의 은행주식 보유한도 상향조정 검토에 대해 日本經濟新聞과 WALL STREET JOURNAL 등 주요 외국언론은 재벌의 영향력 확대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
 - 日本經濟新聞(2001년 6월 25일자)은 재벌도 사금고 역할을 할 은행을 소유하는 것이 오랜 숙원이었는데 대선을 앞두고 재벌이 정부에 규제완화를 요청하고 있는 것은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보도
 - '재벌들이 다시 방만한 과잉투자를 하게 될 것이며, 정부가 개혁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는 서울대 정운찬 교수의 견해를 인용
 - ASIAN WALL STREET JOURNAL(2001년 6월 21일자)은 사설(The limits of South Korea's reforms)에서 은행주식 보유한도 조정은 재벌이 은행을 사금고로 이용하여 투자수익보다는 사업확장 및 시장점유에 더 집중하는 구식관행으로 재벌들이 회귀할 것이라는 우려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보도
 - 한국의 금융위기는 무모한 사업확장을 했던 족벌경영 재벌들 탓이라고 할 수 있으나, 재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가 은행들에게 특정 기업들에 대한 대출을 지시하고 암묵적인 보증을 제공했기 때문임.
 - WALL STREET JOURNAL(2001년 6월 21일자)은 소수의 재벌들이 금융부문을 지배하게 된다면, 한국경제의 재벌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며, 중소기업들이 발전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보도

<참고 2>

은행별 대주주 주식소유 현황(1997년말 현재)

(단위: %)

은행	주주명 (지분율)
조흥	CITI BANK(7.28)*, 증안기금(5.47), 태광그룹(5.19), 대한생명(4.49)
상업	삼성그룹(6.91), 증안기금(6.54), 교보생명(3.95), 성원그룹(3.56)
제일	증안기금(6.1), 대한생명(4.9), 신동아화재(0.1)
한일	증안기금(5.98), 삼성그룹(4.90), 교보그룹(4.02), 일성신약(3.70)
서울	증안기금(6.6), 대한생명(4.0), 신동아화재(0.2)
외환	한국은행(47.88), 성원그룹(1.70), 김태진(1.33), 삼성생명보험(1.24)
국민	정부(15.16), BANK OF NEW YORK(8.43)*, CMB-TEMP FDS/TEMP FRN(2.36), 현대그룹(2.02)
신한	삼성그룹(3.49), 증안기금(2.70), GENESIS GROUP TRUST(1.86)
한미	BOA(18.56), 대우그룹(18.56), 삼성그룹(18.56)
동화	송항배(4.25), 성원그룹(1.64), 인천황해도민인수조합(1.63)
동남	중소기업은행(7.60), 국민은행(6.22), 강병중(2.91), 성원그룹(1.65)
대동	국민은행(7.60), 중소기업은행(7.60), 박창호(1.58)
하나	교보그룹(7.73), 동원그룹(7.15), 장기신용은행(6.32), 동부그룹(5.72)
보람	LG그룹(7.57), 두산그룹(7.52), 고흥명(7.31), 코오롱그룹(7.15)
대구	증안기금(5.84), 삼성그룹(5.30), 대한투신(2.14), 국민투신(1.95)
부산	롯데그룹(23.93), 증안기금(6.45), 한국철강(3.85)
충청	한화그룹(16.55), 김영문(11.74), 증안기금(6.57), 안병균(3.57)
광주	금호그룹(8.63), 교보그룹(6.62), 증안기금(6.01), 라인종합건설(4.55)
제주	천마(27.54), JF KOREA FUND(4.91), 증안기금(4.67)
경기	신동아그룹(10.08), 한진그룹(8.70), 증안기금(6.13), 송창용(1.99)
전북	삼양사그룹(11.29), 라인종합건설(10.55), 새한중금(6.91), 증안기금(6.56)
강원	현대그룹(13.04), 증안기금(6.97), 한국생명보험(4.99)
경남	효성그룹(10.60), 증안기금(6.74), 성원그룹(4.89), 동국제강(4.76)
충북	대유통상(12.74), 증안기금(7.72), 한국도자기(7.19), 교보생명(3.93)

주 : * 는 DR발행분

자료 : 한국은행 은행감독원